

부속서 9D
전문직 서비스

1. 이 부속서는 전문직 서비스 공급에 대한 장벽을 양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축소하거나 점진적으로 철폐하는데 있어 양 당사국이 준수하여야 할 규칙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표준의 개발

2.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영역 안의 관련 기관들이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면허 및 증명에 관한 상호 수용 가능한 표준 및 기준을 개발하고, 양 당사국이 제22.1조의 규정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회합하는 때에 상호인정에 관한 권고를 제공하도록 권장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표준 및 기준은 다음 사안과 관련하여 개발될 수 있다.

- 가. 교육 – 학교 또는 학술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 나. 시험 – 구술시험 및 면접과 같은 평가의 대안적 방법을 포함하여, 면허 자격시험
- 다. 경력 – 면허를 위하여 요구되는 경력의 기간 및 성격
- 라. 행동 및 윤리 – 직업행동의 표준 및 동 표준과 불합치성에 대한 징계조치의 성격
- 마. 전문성 개발 및 자격증의 갱신 – 전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 교육 및 지속적 요건
- 바. 활동 범위 – 허용되는 활동의 범위 또는 이에 대한 한계
- 사. 현지 지식 – 현지 법률·규정·언어·지리 또는 기후와 같은 사안에 대한 지식요건. 그리고
- 아. 소비자 보호 –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담보·직업책임보험 및 고객환불기금을 포함하는 거주 요건에 대한 대안

4. 제2항에 규정된 권고를 접수한 때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회합하는 양 당사국은 권고가 이 협정과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권고를 검토한다. 동 검토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권고를 이행하도록 권장한다.

일시 면허

5.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자국 영역 안의 관련 기관에 권장한다.

전문직 엔지니어의 인정

6. 타방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사업기회에 대한 전문직 엔지니어의 접근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전문직 엔지니어를 위한 승인된 대학교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합의한다.

가. 대한민국은 2개의 싱가포르의 대학교를 승인할 것이다.

나. 싱가포르는 20개의 대한민국의 대학교를 승인할 것이다.

7. 공동의 벤치마크에 대한 상호 신뢰와 합의에 기초하여, 양 당사국은 자격있는 대학교와 그들의 구체적인 자격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타방 당사국에 통보할 것이다.

8. 양 당사국은 호혜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직 엔지니어의 상호 인정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이다.

9. 양 당사국은 전문직 엔지니어의 상호인정에 관하여 협의를 계속하기 위하여 전문직 엔지니어의 등록과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관련 부처 또는 정부기관을 지정할 것이다.

10. 제9.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의 인정은 이 협정상의 전문직 엔지니어를 위한 전문직 요건의 목적으로 적용된다.

검 토

11. 제22.1조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이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한다.